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홍정훈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 팝콘 가격 담합 의혹 신고
 날 짜 2016. 08. 25. (총 2 쪽)

보 도 자 료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 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선발업체 관람료 10% 인상 후, 후발업체 인상 시기·가격 동일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수익 증대 목적으로 소비자 활용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목), 오전 10시30분, CGV 신촌 앞

1. 참여연대는 2016년8월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2.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 했다는,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 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비자들이 일반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표 1> 멀티플렉스 3사 매장의 팝콘과 음료수 가격

(단위 : 원)

	팝콘(기본)	팝콘(기타)	탄산음료	콤보(팝콘+탄산음료)
CGV	기본: 4,500 L: 5,000	5,000 ~ 6,000	기본: 2,000 L: 2,500	기본: 8,500 최대: 9,500
롯데시네마	기본: 4,500 L: 5,000	5,500 ~ 6,000	기본: 2,000 L: 2,500	기본: 8,500 최대: 10,000
메가박스	기본: 4,500 L: 5,000	5,000 ~ 6,000	기본: 2,000 L: 2,500	기본: 8,500 최대: 10,000

출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매장 방문조사 (2016.08.)

3. 멀티플렉스 3사는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영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말 프라임타임 관람료는 기존 10,000원보다 1,000원 인상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큼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0원 수준입니다.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가격에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2015년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시민단체들은 2015년2월에도 팝콘 등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6.08.25.)

■ 참고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5.02.09.)

: <http://goo.gl/3vNBcd>